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61970(본소), 2021나61987(반소) 판결 [계약금
반환청구 · 약정금]

재판경과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6672(본소), 2023다236689(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3. 5. 3 선고 2021나61970(본소), 2021나61987(반소)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31 선고 2020가소363685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규모

담당변호사 이정환

피고(반소원고), 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득열

변론 종결2023. 3. 22.

판결 선고2023. 5. 3.

제1심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8. 31. 선고 2020가소363685(본소),

2021가소334509(반소)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2023. 5.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 청구취지와 같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섬유 의복 관련 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3D 프린팅에 대한 개발, 제조 및 판매 유통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20. 6. 5. 피고와 사이에 'C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개발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프로그램 개발 내용)

C 프로그램	1	12,000,000	12,000,000	1,200,000
- D 파일 입력 기능				
- D 파일 입력(도형)별 출력기능				
- E 설정Line 생성기능				
- E 설정Line 이동기능				
- 마우스 기반 E 추출기능				
- E 데이터 출력 기능				
총액			13,200,000원(부가세 포함)	

제2조(물품인도)

① "을(피고, 이하 같다)"은 현장 요구에 의해 "갑(원고, 이하 같다)"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제3조(대금결제)

① "갑"은 50% 선금금(6,600,000원)을 7일 이내에 선 지급하며, 납품이 완료되고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잔금(6,600,000원)을 "을"에게 결제되도록 하며, "을"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절차수행)

① 물품인도는 현장 도착도로 한다.

제5조(품질 및 납기)

① 물품 납품에 따른 품질 및 납기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납기일은 선금금 입금일 포함 3개월로 한다.

다. 원고는 2020. 6. 17. 피고에게 선금금 6,6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0. 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4조, 제5조의 위약상황이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므로 계약금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의 납기일은 선금금 입금일 포함 3개월이 되는 때로 피고는 원고가 선금금을 입금한 2020. 6. 17.로부터 3개월 후인 2020. 9. 16.까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완료하여 납품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납품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0. 5.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 원상회복으로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선금금 6,6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2020. 6. 25.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완료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원고의 요구사항들을 모두 반영하여 다섯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을 추가 수정하고 그 파일을 원고에게 송부하였다. 따라서 늦어도 피고가 원고에게 다섯 번째 수정본 프로그램을 인도한 시점인 2020. 7. 23.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모두 이행되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인 6,6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 1) 원고와 피고는 2020. 5. 7. 이 사건 프로그램의 개발과 관련하여 프로그램이 적용될 작업 공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상세 요구사항 등을 정리하는 미팅을 개최하였다.
- 2) 원고(대표 G)는 2020. 5. 19. 피고(당시 대표 H)에게 실제 사용하는 CAD의 D파일과 잉크헤더 개수가 6개인 샘플화면을 전달하였다.
- 3) 피고는 2020. 6. 25. 원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실행 파일과 매뉴얼을 전달하고 테스트를

요청하였다. 원고(직원 I)는 2020.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이 다운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고, 피고는 처음 원고로부터 받은 D 프로그램과 형식이 다른 것이 원인이라고 회신하였다.

4) 원고는 2020. 7. 10. ① 봉제CAD 프로그램에서 저장된 D파일을 바로 불러오는 기능, ② 최대 10개까지 잉크헤더 개수의 확장, ③ 원점지정, ④ 스크롤 기능, ⑤ 데이터파일 저장 등 5가지의 수정사항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0. 7. 11. 개발스펙을 바꾸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같다는 취지로 난색을 표하였다가, 2020. 7. 14. 위 ①번, ⑤번 수정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파일을, 2020. 7. 20. ③번 수정사항을 반영한 프로그램 파일을, 2020. 7. 23. ②번 수정사항을 반영한 최종 프로그램의 설치파일(J)을 원고에게 각 송부하였다(④번 수정사항은 최종 파일 송부 전까지 수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원점 180도 회전기능과 원점거리 값 입력 기능을 추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같은 날 위 추가 기능은 이 사건 프로그램 개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업그레이드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6) 피고는 2020. 8. 14. 원고에게 위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동영상과 거래명세표를 송부하고 잔금이 입금되면 최종 프로그램 파일을 송부하겠다고 통지하였다.

7) 감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파일을 직접 테스트한 후, ①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6가지 프로그램이 모두 정상적으로 동작하므로 개발이 100% 완료되었고, ② 계약서에 기재된 기능 외에 6개의 주요기능이 추가되었으며, ③ 최초 계약범위 대비 최종 개발한 항목이 2배 증가하였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1. D 파일 입력 기능	1. E 개별 삭제 기능 (개별, 전체)
2. D 파일 모듈(도형)별 출력 기능	2. 도면 확대 기능
3. E 설정 Line 생성 기능	3. 원점 표시 기능
4. E 설정 Line 이동 기능	4. 잉크헤더노즐 10개로 변경
5. 마우스 기반 E 추출 기능	5. 원단의 180도 회전 기능
6. E 데이터 출력 기능	6. 원점 위치 이동 기능
	7. W, H → W, L로 텍스트 수정
	8. B 로고 삭제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급계약에서 목적물의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었고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마쳤다면 일이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개별 사건에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쳤는지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 참조).

피고가 2020. 6. 25.경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파일과 매뉴얼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테스트를 요청하였고, 이후 원고의 추가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수정하고 2020. 7. 23. 수정 프로그램 파일을 원고에게 송부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위 프로그램 파일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함이 확인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피고가 추가 개발한 항목이 이 사건 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항목으로 기능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계속된 협의의 과정에서 추가하기로 합의된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추가 개발한 항목이라 판단된 위 기능들은 사용 편의성을 위한 것은 맞지만 통상적인 기능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최초에 개발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하여 이에 대한 견적을 작성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2020. 8. 14. 수정한 최종 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을 송부해주지는 않았으나, 이는 이미 2020. 7. 23.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최종 수정 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을 원고에게 제공한 이후이므로 이것을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해제 통보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2020. 6. 25.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개발한 프로그램을 송부하여 테스트를 요청하였고, 2020. 7. 23. 원고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 수정 프로그램까지 송부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함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즈음 피고의 납품 및 원고의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납품이 완료되고 검수가 완료 된 후 7일 이내에 잔금 6,600,000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은 2020. 7. 30.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6,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잔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7. 3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5.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며, 피고의 반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우종

판사위은숙

판사신승아